韓國開發研究
제28권 제2호(통권 제98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강 동 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Is Dynamic Loan Loss Provisioning Necessary in Korea?

Dongsoo Kang
(Research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핵심주제어: 동태적 대손충당금(Dynamic Loan Loss Provisioning), 수익평준화(Earning Smoothing),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 JEL 코드: E3, G2
• 논문투고일: 2006. 6. 6 • 심사시작일: 2006. 6. 13 • 심사완료일: 2006. 7. 20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dynamic loan loss provisioning is necessary in Korean banking environments. Under the dynamic provisioning rule banks are required to accumulate additional reserves to general and specific provisionings in preparation for expected loan losses until maturity. This provisioning is most effective in the case that banks tend to recognize less loan losses in the business upturns and/or in the periods of increasing profits. The empirical study, however, shows that banks support procyclicality of loan loss privisioning and earning smoothing behavior over profit fluctu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 would not seriously need the introduction of dynamic loan loss provisioning. But this policy implication does not seem robust in view that the recent experience shows the countercyclicality of loan loss provisioning practices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arnings and provisioning after financial restructuring was completed. This result is partly attributable to vigorous shareholder activism because of high foreign ownership of most commercial banks. Once it is true that bank management is more interested in short-term performances, current loan loss provisioning would have attributes of impairing capital adequacy, hence strengthening loan loss provisiong requirements.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요청되는 환경은 은행이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거나 단기적인 업적에 집착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기중화적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모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단기업적주의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탄력적 적립을 통한 수익평준화 성향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Ⅰ. 서 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대출과 여타 금융상품 간에 불완전한 대체재(imperfect substitutes) 관계가 존재할 경우 차주는 은행 이외의 자금원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에 대한 대출을 축소 또는 회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신용위험이 높은 차주는 여타 자금조달수단을 찾지 못하여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생산의 감소 및 경기의 추가적인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금융거래, 특히 은행의 대출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내포한다(Bernanke and Gertler[1989]). 경험적으로도 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Borio, Craig, and Lowe[2001]).[1)]

금융기관에 대해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규제 등 금융감독이 실시될 경우 경기변동의 진폭은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Blum and Hellwig[1995],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1999]). 규제자본량은 은행의 수익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이다.[2)] 2007년 금융기관에 대한 보다 정교한 규제인 신바젤협약이 도입·실시된다면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바젤협약체제에서는 기존의 바젤협약체제에 비하여 규제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가 어렵게 되고,[3)]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내부등급법이 도입되기 때문이다.[4)]

대출 및 금융감독의 경기순응성을 우려하여 최근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시

1)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은행대출과 실질 GDP의 상관계수는 0.70에 달한다(한국은행[2005]). 김현욱·이항용(2005)은 우리나라에서 GDP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대출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은행이 보유하는 잉여자본(buffer capital)은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2) 경기가 수축기에 접어들면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규제자본을 충족하기 위해서 증자가 필요하지만 이때는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시기이다. 따라서 은행은 자본을 보강하기보다는 대출을 축소하는 정책을 취하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경기는 더욱 하강하게 된다. 결국 금융감독은 경기 수축기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3) 경기하강기에 규제자본을 준수하지 못하는 은행은 대출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은행은 규제자본량은 동일하지만 신용위험이 높은 차주에게 여신을 제공하여 수익을 제고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기존의 바젤협약에서는 가능하지만 신바젤협약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신용공급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경기순응성이 증가할 수 있다(Carpenter, Whitesell, and Zakrajsek[2001]).

4) Altman, Resti, and Sironi(2002)는 예상손실률과 회수율 간에 유의적인 負(-)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상승국면에서는 요구자본량이 이전보다 더욱 하락하고 경기하강국면에서는 더욱 상승하여 경기순응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동태적 대손충당금(dynamic loan loss provisioning)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5]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란 은행이 정상채권에 대한 일반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에 대한 특별대손충당금 이외에 대출채권 전체의 장기 예상손실률을 감안하여 동 손실에 대비하는 충당금을 지칭한다. 즉, 부실채권의 발생은 감소하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증가하는 호황기에는 증가하고 부실채권의 발생이 증가하여 신용위험이 현재화하는 불황기에는 감소 또는 소진되도록 설계된, 일반대손충당금 및 특별대손충당금과는 별도로 적립되는 계정이다.[6]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대출 및 수익성의 과도한 변동성이 축소되어 개별 금융기관의 미시적 관점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거시적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동 제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분석적 평가가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금융 및 금융감독에 따른 경기순응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요청되는 환경은 은행이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거나 단기적인 업적에 집착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경우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필요조건이 우리나라의 은행경영 행태에서 발견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동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기존의 대손충당금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정의, 특성, 사례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Ⅲ장에서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과 분석모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은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대손충당금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면서 거시금융감독제도 운영의 원칙을 강조하기로 한다.

5) 2005년 7월 31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6)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는 2000년 7월 스페인에서 처음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고(Lis, Pages, and Saurina [2002]), 최근 프랑스와 영국의 금융감독당국에서도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다.

II. 경기변동과 대손충당금제도

1. 대손충당금제도의 개요

금융기관은 자신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차주가 대출계약을 약정된 방식대로 이행하지 않을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신용위험에 대하여 여신포트폴리오의 손실예상액을 추정하고 동 추정액만큼을 대손충당금[7]으로 설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보다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은 대차대조표상의 대손충당금 적립금(loan loss allowance or reserve)과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충당금 전입액(loan loss provision)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금은 일정 시점에서의 미래손실에 대한 비축자금 총액이라는 측면에서 저량변수(stock variable)인 반면,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충당금 증가액을 지칭하는 유량변수(flow variable)이다.[8]

대손충당금은 다시 일반대손충당금(general provision)과 특별대손충당금(specific provision)으로 나뉜다. 전자는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지만 아직 현재화하지 않은 손실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자산에서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후자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한 후 계상한 예상손실금액을 지칭한다. 개념적으로 두 가지 대손충당금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손실에 대한 관점이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이냐 아니면 과거지향적(backward-looking)이냐에 있다. 일반대손충당금은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한 예측치라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반면, 특별대손충당금은 손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9] 그런데 실무적으로 금

7) 충당금은 보유자산의 손실 발생에 대비하거나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인식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서 부채성 충당금과 평가성 충당금으로 구별된다. 평가성 충당금은 특정 자산에 대하여 상계적 평가를 함으로써 자산의 현재가액을 그 실질가치에 접근시키려는 목적의 충당금을 말하는데 대손충당금은 평가성 충당금에 해당한다.

8) 총대손비용(total loan loss expenses)은 대손충당금 전입액과 대손상각(loan write-off)을 합한 금액이다. 이때 대손상각은 대손의 발생이 현재화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자산을 장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대손충당금 순증(net loan loss provision)은 대손충당금 전입액에서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9) 1999년에 도입된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에 대한 평가(FLC)를 기초로 한 자산건전성분류제도에서는 특별대손충당금이 부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실발생 징후가 명백한 경우를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의 판정기준이라고 할 때 여전히 과거지향적인 성격이 높게 반영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표 1〉 은행권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 현황[1)]

(단위: %)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정 상	0.5	0.75	1
요주의	2	8	12
고 정	20	20	20
회수의문	50	55	60
추정손실	100	100	100

주: 1)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자산건전성 분류가 고정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융감독당국은 일반 및 대손충당금을 분리하여 부과하기보다 두 가지 대손충당금을 합한 총액의 최저수준을 규율한다. 우리나라 은행의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여신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반대손충당금이고, 나머지가 특별대손충당금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금으로 대손충당금 이외에 자본[10)]이 있는데, 양자 간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자본은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생존을 유지시키기 위한 자금인 반면, 대손충당금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충격, 예를 들어서 신용위험에 따른 예상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적 성격을 띤다.[11)]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자본에는 최소요구액이 부과되는 반면, 기 발생 또는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연계하거나 사전적으로 예상손실률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이 적용된다.

10) 자본은 개념적 의미의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과 실체적 의미의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자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감안할 때 일정한 확률 허용치 내에서 금융기관이 생존을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자본인 반면, 규제자본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자본량을 말한다.

11) 이때의 자본은 금융감독상의 자기자본과는 상이하다. BIS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상 자기자본은 기본자본(Tier I capital)과 보완자본(Tier II Capital)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은 다시 주식자본과 공표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으로 구성되고, 보완자본에는 비공표준비금, 재평가준비금, 기한부 후순위채권 등과 함께 일반대손충당금(위험가중자산의 1.25%까지 보완자본으로 인정)이 포함된다. 여기서 일반대손충당금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으로서의 자본은 BIS 비율상의 자기자본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IS 비율상의 자기자본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불특정 손실을 충당하는 자금도 포함하고 있다.

2. 금융감독의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

마찰적 요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제(frictionless economy)에서 금융은 단지 실물경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는 금융거래의 행태가 실물경제의 자원배분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Modigliani and Miller[1958]) 실물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금융자산의 가격과 양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확실성하에서 경제주체 간 정보의 양과 질이 상이할 경우에 금융은 실물경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금융경제학계에서는 자금의 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자금의 차입자인 기업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금융의 실물경제적 유관성(relevance)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논거로 주목되어 왔다.[12]

거시경제학자들은 외생적인 요인이 실물경제의 경기순환을 구동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Cochrane[1995]). 이때 외생적 요인은 자연현상에 의한 생산성의 예상치 못한 변화 등과 같이 경제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충격일 수도 있고 통화량이나 재정지출규모와 같이 개별 민간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정보로 인식하는 정책 결정일 수도 있다. 한편, 경제 내의 각종 제도 및 제약은 이러한 외생충격을 확산·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13] 만약 금융이 실물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전경제라면 금융거래 및 제도에 의한 경기변동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의 존재로 인하여 금융거래와 관련된 관행, 제도, 감독 등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는 신용순환[14]이나 자산가격순환[15]이 경기순환의 주기와 진

12) 불확실성에 대하여 전통적인 거시경제학과 금융경제학은 서로 상이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례로 회귀분석에서 전통적인 거시경제학은 설명변수에 관심을 두고 잔차는 노이즈로 인식하여 가급적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선호를 보이는 반면, 금융경제학은 오히려 노이즈를 경제변수가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으로 금융경제학에서는 잔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금융의 역할도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Fisher and Merton[1984]).

13) 내생적 요인에 의한 경기변동이론은 Scheinkman and Weiss(1986)를 참고하라.

14) Kocherlakota(2000)는 실물경기의 진폭, 지속성, 비대칭성 등이 외부적인 충격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용의 변화가 경기변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업에 긍정적인 충격이나 소규모의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은 즉각적으로 투자를 변경시키기보다 소비나 저축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규모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투자를 축소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용제약은 외부 충격을 비대칭적으로 확산시키게 된다."

15)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자산가격이 경기순환의 진폭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을 Kiyotaki and Moore(1997)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기업이 토지를 담보로 이미 최대한의 자금을 차입한 결과 추가적인 외부차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단기적으로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충격이 발생하면 동 기업은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기업의 미래 수익과 순자산이 감소하여 향후 더욱 심한 신용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동 기업은 더욱더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한

폭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금융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정보의 비칭성의 존재로 금융상품 간에 불완전한 대체재(imperfect substitutes) 관계가 발생하면(Bernanke and Gertler[1989]) 금융상품, 특히 은행의 대출이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보인다.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면 은행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에 대한 대출을 축소 또는 회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신용위험이 높은 차주는 여타 자금조달수단을 찾지 못하여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생산의 감소 및 경기의 추가적인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은행의 대출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ajan(1994)은 은행의 임직원이 단기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성향에 주목하였다. 만약 금융시장 참여자가 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나 차입자의 신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수익을 통하여 은행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은행의 대출정책이 경기순응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은 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조건을 이완하여 과잉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차입자의 신용능력이 충분히 악화된 이후에야 대출을 축소한다.[16]

한편, 금융상품 간에 불완전한 대체성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신용제약이 실물경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규제와 같은 금융감독이 도입된다면 경기변동의 진폭은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Blum and Hellwig[1995]). 규제자본량은 은행의 수익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수축기에 접어들면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규제자본을 충족하기 위해서 증자가 필요하지만 이때는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시기이다. 따라서 은행은 자본을 보강하기보다는 대출을 축소하는 정책을 취하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경기는 더욱 하강하게 된다. 결국 금융감독은 경기 수축기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실물경제의 경기변동은 외생적 충격이 내생적인 제도 및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확대·증폭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편,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여 투자의 현금흐름이 저조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이는 다시 기업의 순자산을 더욱 감소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토지가격의 하락이 부재할 경우보다 토지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줄여야 하는 승수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

16) Rajan(1994)이 주장하는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문제는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우나 자본이 취약한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금융감독이 필요하다.

[그림 1] 금융과 경기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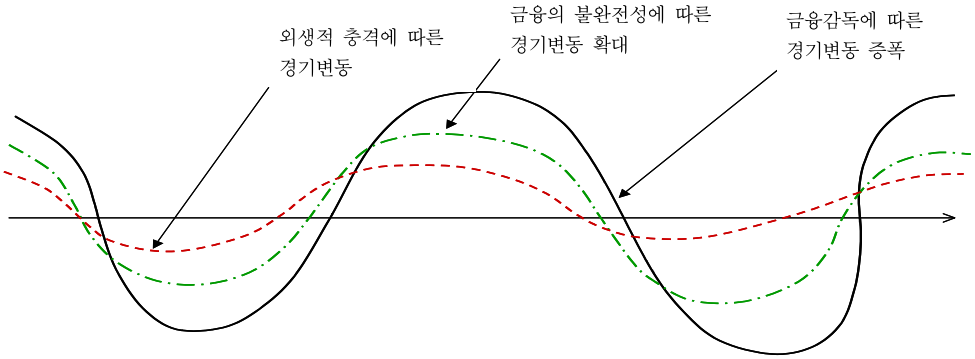

이때 금융거래 및 금융시장 자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경기의 진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경기순환을 증폭시키고 경기의 상승 및 하강국면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금융감독제도에 따른 경기순응성 문제는 사전적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신용공급에 대한 의사 결정 시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위험관리시스템이 미비한 개발도상국의 은행은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금융시스템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수익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관행 및 능력을 고려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감독제도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dynamic loan loss provisioning)[17]이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란 은행이 정상채권에 대한 일반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에 대한 특별대손충당금 이외에 대출채권 전체의 장기 예상손실률을 감안하여 동 손실에 대비하는 충당금을 지칭한다. 즉, 부실채권의 발생은 감소하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증가하는 호황기에는 증가하고 부실채권의 발생이 증가하여 신용위험이 현재화하는 불황기에는 감소 또는 소진되도록 설계된, 일반대손충당금 및 특별대손충당금과는 별도로 적립되는

17) 통계적 대손충당금제도(statistical loan loss provisioning) 또는 탄력적 대손충당금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 2] 경기순환에 따른 동태적 대손충당금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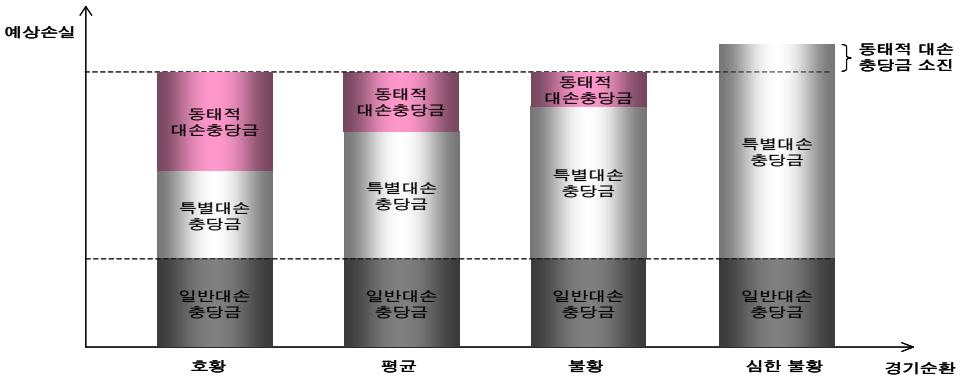

계정이다(그림 2 참조). 동태적 대손충당금은 장기 예상손실률의 일정 신뢰수준을 한도로 추가적인 손실을 흡수함으로써 은행의 경영실적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18]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는 2000년 7월 스페인에서 처음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Lis, Pages, and Saurina[2002]).[19] 동 제도 도입 이전에 스페인에서는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명확하였는데, 그 중요한 이유로 은행 경영진의 위험추구성향과 대손충당금의 미흡이 지목되었다. 따라서 위험추구성향을 보이는 은행 경영진의 대손충당금 적립 결정을 제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경기상승국면에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견제하려는 것이 동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이었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의 금융감독당국에서도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의 필요성에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타 국가에서는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뿐더러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함으로써[20] 신용순환의 진폭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경기변동의 진폭이 개발도상국보다 현저히 작기 때문에 지나친 감독정책적 개입이 정당화되기도 쉽지 않다.[21] 그러나 이러한 주장

18) 동태적 대손충당금은 특별대손충당금의 대체 장치라기보다 보완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19) 스페인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Page의 Box를 참고하라.
20) Asea and Blomberg(1998)는 1977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의 580개 은행이 공급한 약 200만개의 대출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Grossl-Geschwendtner (1993)는 미국보다 독일에서 대출의 변동폭이 작음을 보고하고 있다.
21) 사실 선진국 중에서 스페인에서만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스페인의 실물경제 및 신용순환의 진폭이 여타 국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페인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 스페인의 대손충당금제도는 정상 및 요주의 대출에 대한 일반충당금, 부실대출에 대한 특별충당금,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잠재손실에 대비한 탄력충당금으로 구분
  ○ 일반충당금: 정상 및 요주의 분류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충당금 적립비율은 일반대출 1%, 주택담보대출 0.5%
  ○ 특별충당금: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주택담보대출은 3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충당금 적립비율은 일반대출 10～100%, 주택담보대출 25～100%
  ○ 탄력충당금: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한 잠재손실규모에서 실제로 발생한 부실대출에 대해 기 적립한 특별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 탄력충당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잠재손실규모는 총대출금에 잠재손실률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잠재손실률 산정은 표준방식과 내부모형방식으로 구분
  ○ 표준방식은 감독당국이 잠재손실률을 산정하여 제시하는데, 스페인의 경우 대출자산의 리스크를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자산별로 0.0～1.5%의 잠재손실률을 적용
    * 공공대출: 0.0%, 담보비율(LTV) 80% 이하 주택담보 및 신용등급 A 이상 기업에 대한 대출: 0.1%, 금융리스 및 기타 담보에 대한 대출: 0.4%, 타 위험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 0.6%, 내구재 구입을 위한 소비자대출: 1.0%, 신용카드대출: 1.5%
  ○ 내부모형방식은 은행의 내부 신용리스크 모형을 이용하여 과거의 데이터 베이스를 기초로 직접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은행의 내부모형은 감독당국이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승인한 경우에만 활용

□ 한편, 탄력충당금의 최고적립한도는 잠재손실규모의 3배로 제한하여 과도한 충당금 적립을 방지

자료: Lis, Pages, and Saurina(2000); 금융감독원(2004).

이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태적 대손충당금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분석을 요구한다.[22)]

22) 호주에서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대형은행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Westpac Bank[1999], Cortavarria, Dziobek, Kanaya, and Song[2000]).

Ⅲ. 실증분석

1. 분석의 의의

거시금융감독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제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대손충당금 전입액과 적립액이 경기변동과 유관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으로 인하여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even and Majnoni(2001)는 대다수의 은행이 무수익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Cavallo and Majnoni(2001)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가 경기순응성을 내재하고 있는 가운데 대손충당금에 대한 규제 및 은행의 관행이 금융감독의 경기순응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은행의 관행이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불건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진국과는 달리 개발도상국가에서 경기는 호조를 보이지만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상승국면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이 적정수준을 하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은 경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990년 이후의 시계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대손충당금 적립금액은 총자산 대비 평균 0.85%로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변화도 크지 않았다. 또한 동 기간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GDP 증가율의 상관관계는 경기역행적(-42%)이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이 급증하고 대손충당금 관련 금융감독이 강화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4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1998년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GDP 증가율의 상관관계도 0.59%로 변화하여 대출이 증가하는 호경기[23]에 대손충당금 적립액도 증가하는 경기순응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후진적이었던 대손충당금 적립

23) 한국은행(2005)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은행대출과 실질 GDP의 상관계수는 0.70에 달한다. 그리고 기업과 가계의 재무여건에 대한 은행 대출태도의 민감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수익 및 비용구조 면에서 은행 간 차별화 정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군집행동의 발생소지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3] GDP 증가율, 대출증가율 및 대손충당금의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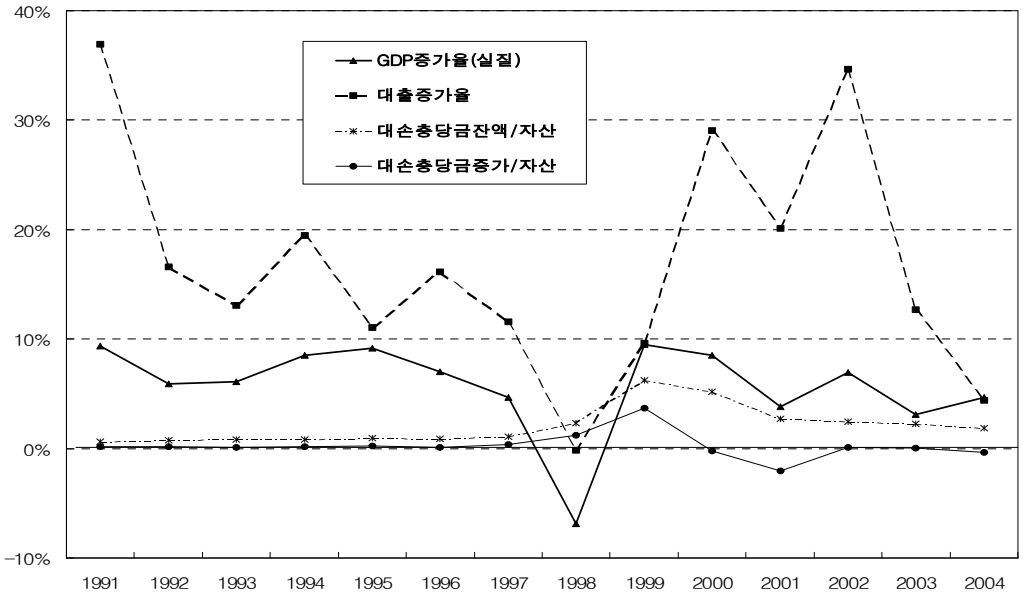

관행이 외환위기 이후 선진적인 양태로 변모하였다고 하겠다.

2. 가설 및 분석모형

가. 경기역행성가설

본 소절에서는 경기변동과 대손충당금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개별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은행별 시계열 및 횡단면 자료를 통합한 회귀분석(pooled regression)을 통하여 경기순환국면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적립수준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본다. 이때 귀무가설은 "GDP 증가율이 높아지면 개별 은행의 총자산에서 대손충당금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다"이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에 대한 회귀분석[24]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5]

24) 패널자료에서 문제가 되는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 자기상관(serial correlation) 문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Newey-W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25) 본 소절의 경기역행성가설과 다음 소절의 수익평준화가설에서 사용된 회귀분석은 Cavallo and Majnoni (2001), Bikker and Metzemakers(2002)에서 사용한 식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구조조정, 대손충당금제도 변화, 공적자금 등의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left(\frac{LLR}{A}\right)_{it} = c + \alpha_1 \triangle GDP_t + \alpha_2 \left(\frac{L}{A}\right)_{it} + \alpha_3 \triangle A_{it} + \alpha_4 \left(\frac{CAP}{A}\right)_{it} + \alpha_5 Drstr1_t + \alpha_6 Dreg_t + \alpha_7 Dpf1_{it} + \epsilon_{it}$$

여기서 종속변수는 총자산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액비율(*LLR/A*)이고, 설명변수는 국내총생산증가율(△*GDP*), 총자산 대비 대출비율(*L/A*), 총대출증가율(△*L*), 단순자기자본비율(*CAP/A*)[26] 등이다.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금융구조조정, 그리고 대손충당금제도의 변경은 은행의 대손에 대한 처리관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금융구조조정(*Drstr1*),[27] 대손충당금 규제변경(*Dreg*),[28] 공적자금의 투입 여부(*Dpf1*)[29] 등을 더미변수로 통제하였다.

GDP 증가율에 대한 계수(α_1)의 값이 유의적으로 陽(+)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된다. 즉, 대손충당금 적립금이 경기순응적이기 때문에 호경기에 대손의 발생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실에 대비하여 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α_1의 값이 유의적으로 陰(-)이면 대손충당금 적립금이 경기역행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나머지는 회귀분석의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살펴보기 위해서 추가된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총자산 대 대출비율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 총자산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보유하는 대출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α_2는 陽(+)의 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총대출증가율이 높아지면 대출의 질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야 한다. 즉, α_3의 값도 陽(+)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은 보완적인 관계를 지닌다. 은행은 BIS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자기자본에 기본자본과 일반대손충당금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은행이 일정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할 경우 기본자본이 증가하면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할 유인이 생긴다. 즉, α_4의 값은 陰(-)일 가능성이 높다.

---

26)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일부가 위험가중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설명변수로 선택하였다.

27) 1997년부터 2002년까지를 금융구조조정 기간이라고 설정하여 더미변수의 값에 1을 부여하였다.

28) 1999년부터 자산건전성 분류가 강화되었고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더미변수값으로 1998년까지는 0을, 1999년 이후에는 1을 부여하였다.

29) 구조조정기에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에 1을 부여하였고, 비구조조정기의 모든 은행 그리고 구조조정기에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은행에는 0을 부여하였다.

금융구조조정기에는 대손의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α_5의 값이 陽(+)일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의 대손충당금제도 강화는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의 구조적인 변혁이라는 점에서 α_6도 陽(+)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적자금 투입 은행은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을 것이므로 α_7 역시 陽(+)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 수익평준화가설

은행 경영진의 입장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은 일종의 선택변수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최소적립요건을 충족시킨 이후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것인지는 해당시점 은행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 경영진은 대손충당금이라는 조절수단을 통하여 주주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30]

Greenwalt and Sinkey(1988)는 1976년부터 1984년까지 미국의 은행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과 대손충당금 간에 유의적인 陽(+)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면서 수익평준화가설(Earning Smoothing Hypothesis)을 주장한 바 있다. 즉, 은행은 수익이 증가하는 기간에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증가시키고 수익이 감소하는 기간에는 대손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 변동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31] Greenwalt and Sinkey(1988)의 연구 이후 수익평준화가설은 여러 국가에서 검증되어 왔다. 최근 Laeven and Majnoni(2001)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에서 수익이 높을수록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많아짐을 보임으로써 선진국에서 수익평준화가설이 지지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의 은행에서는 대손충당금과 수익 간에 負(-)의 상관관계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서 동 가설이 지지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32] Bikker and Metzemakers(2002)는 OECD 국가의 은행을 대상으로 수익과 대손충당금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OECD 국가 전체와 주요 개별 국가에서 수익평준화가설이 유효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수익평준화가설은 대손충당금의 경기순응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절의 경기역행성가설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금융감독의 시각에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

30) 은행업은 경영진이 수익을 평준화하기가 가장 용이한 산업이다(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1986]).

31) 은행이 수익을 평준화하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배당을 순이익 이내로 제한하는 금융감독상 규제나 위험기피성향을 보이는 주주의 효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경영진의 계약상 의무 등에 기인할 수도 있다.

32) Laeven and Majnoni(2001)는 이러한 결과가 대륙별 기업지배구조의 격차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배구조가 취약한 아시아와 남미에서는 수익평준화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 즉, 은행의 수익이 경기와 동행하고 대손충당금의 수익평준화가설이 사실이라면 대손충당금은 호경기에 증가하고 불경기에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경기순환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GDP와 같은 거시변수에 의한 영향과 수익 등 미시변수에 의한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수익평준화가설 검증의 회귀분석에서는 은행의 수익성 변수를 추가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평준화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33]

대손충당금 전입비율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left(\frac{LLP}{L}\right)_{it} = d + \beta_1 \triangle GDP_t + \beta_2 \left(\frac{EBTP}{A}\right)_{it} + \beta_3 \left(\frac{L}{A}\right)_{it} + \beta_4 \triangle L_{it} + \beta_5 \left(\frac{GAP}{A}\right)_{it} + \beta_6 D_{rstr_2} + \beta_7 D_{PF_2} + \beta_8 D2002 + \beta_9 D2003 + \xi_{it}$$

위 식은 기본적으로 앞 소절의 회귀분석식과 매우 유사하다. 상이한 내용은 종속변수가 총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전입액비율(*LLP/L*)이라는 점과 설명변수에서 수익변수로서 총자산 대비 순대손비용및세금납부전이익(*EBTP/A*)[34]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분석기간은 1999년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기준이 변경된 이후의 시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35] 2002년의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제도 변경[36] 및 가계신용 부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2002년과 2003년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상기한 회귀분석식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GDP 증가율과 수익변수의 계수의 부호이다. GDP 증가율은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경기역행성가설과, 그리고 총자산 대비 순대손비용및세금납부전이익은 수익평준화가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β_1이 유의적으로 陰(-)의 값을 가지면 경기역행성가설을 지지하고, β_2의 값이 유의적으로 陽(+)일 경우 수익평준화가설이 타당성을 지님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33)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식(1994)이 은행의 적정대손충당금 산정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수익평준화가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개별 은행에 대한 실증분석 차원은 아니고 은행권 전체의 대손충당금적립액과 총수익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

34) 순대손비용은 대손충당금 전입액과 지급보증 전입액에서 대손충당금 환입액과 지급보증 환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35) 개별 은행에 대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경기역행성가설과 수익평준화가설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1998년 이전에는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전입액 및 환입액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앞 소절에서는 경기역행성가설을, 그리고 본 소절에서는 수익평준화가설을 분리하여 논의하였다.

36) 가계부실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가계여신과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이 기업여신과 동일하였으나 2002년 11월에는 기업, 가계, 신용카드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별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요건을 <표 1>과 같이 차등화하였다.

3. 분석 결과

가. 경기역행성가설 검증 결과

<표 2>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손충당금 적립금은 경기순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GDP 증가율만을 고려한 회귀분석(표 2의 (1))에서는 계수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타 재무변수와 더미변수를 고려한 회귀분석(표 2의 (5)와 (6))에서는 경기순응적인 방향으로 10% 이내의 유의성을 보인다. 즉, 경기상승국면에서 총자산 대비 대손충당금

〈표 2〉 대손충당금 적립액에 대한 실증분석(1991~2004년)

	(1)	(2)	(3)	(4)	(5)	(6)
△*GDP*	0.021 (0.032)				0.084* (0.047)	0.071* (0.042)
L/A		0.0120 (0.013)			0.00448 (0.013)	-0.023 (0.015)
△*L*			-0.00217 (0.010)		-0.010 (0.012)	-0.019 (0.012)
CAP/A				-0.179*** (0.041)	-0.232*** (0.064)	0.011 (0.026)
*Drstr*1						0.005 (0.003)
Dreg						0.017*** (0.004)
*Dpf*1						0.013*** (0.005)
Adj-R^2	-0.003	-0.005	0.000	0.088	0.096	0.387
Akaike info criterion	-5.033	-5.024	-5.078	-5.170	-5.115	-5.489
Schwarz criterion	-5.000	-4.990	-5.046	-5.138	-5.031	-5.356
F-statistic	0.389	0.054	1.069	21.417	6.223	18.712

주: ( ) 안은 표준오차이고, *, **, ***는 각각 10%, 5%, 1%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적립비율이 비교적 유의적으로 높아진다. 둘째, 총자산 대비 대출비율이나 총대출 증가율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다. 유의성이 비교적 미흡하지만 이들 변수의 계수가 陰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전적인 예상과는 상반된다. 즉, 대출의 규모가 커지고 자산 대비 대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대출의 신용위험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셋째, 금융구조조정이나 대손충당금제도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회귀분석(표 2의 (5))에서 단순자기자본비율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負(-)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기나 제도변경을 고려한 회귀분석(표 2의 (6))에 의하면 자기자본과 대손충당금의 보완관계가 사라졌다. 넷째, 더미변수 중에서 대손충당금제도 변경과 공적자금 투입 여부는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1999년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의 강화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대손충당금 수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경기역행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국내은행도 호경기에 대손충당금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립하는 선진국의 관행을 따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나 금융감독제도상으로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된다.

나. 수익평준화가설 검증 결과

<표 3>은 2000년 이후의 연간 자료[37]를 이용하여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이후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경기와 동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경기역행성가설을 기각하였다. 경기상승국면에서 총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전입액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손충당금 적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을 고려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매우 견고한(robust) 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총자산에서 대손충당금적립및세금납부전이익이 차지하

37) 1999년 4/4분기부터는 분기별 자료가 존재한다. 그러나 분기별 대손충당금 전입액 자료에는 계절성(seasonality)이 강하게 나타난다.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4분기에 매우 적고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2/4분기와 4/4분기에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1/4분기와 3/4분기에는 내부감사만으로 금감원 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측면에서 분기별 자료의 유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표 3〉 대손충당금 전입액에 대한 실증분석(2000~2004년)

	(1)	(2)	(3)	(4)	(5)	(6)
△GDP	0.408*** (0.134)		0.473*** (0.145)	0.401** (0.154)	0.413*** (0.155)	0.632*** (0.201)
EBTP/A		0.380 (0.448)	0.525 (0.335)	0.824** (0.345)	0.808** (0.344)	0.906*** (0.302)
L/A				-0.098*** (0.030)	-0.101*** (0.031)	-0.068** (0.030)
△L				-0.038* (0.021)	-0.035 (0.024)	-0.035 (0.029)
CAP/A				-0.361 (0.325)	-0.269 (0.326)	-0.177 (0.310)
Drstr2					-0.001 (0.005)	0.013** (0.005)
Dpf2					0.009* (0.005)	0.010** (0.005)
D2002						-0.020** (0.008)
D2003						0.021*** (0.007)
Adj-R^2	0.111	-0.001	0.142	0.315	0.325	0.442
Akaike info criterion	-4.778	-4.579	-4.718	-4.889	-4.875	-5.040
Schwarz criterion	-4.715	-4.512	-4.618	-4.686	-4.605	-4.703
F-statistic	9.983	0.918	6.298	6.797	5.324	6.544

주: ( ) 안은 표준오차이고, *, **, ***는 각각 10%, 5%, 1%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는 비율은 총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전입액비율과 유의적인 陽(+)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수익평준화가설이 지지되었다. 셋째, 여러 통제변수 중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총자산 대비 대출비율이 대손충당금 전입액과 負(-)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신용위험도 높아져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넷째, 더미변수들은 대체로 대손충당금 적립행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구조조정기와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의 적립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대손충당금제도가 부분적으로 강화된 2002년보다는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여신의 부실이 급증한 2003년도에 대손충당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000년 이후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행태는 선진국 은행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Laeven and Majnoni(2001)의 미국과 유럽 은행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수익평준화가설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상승국면에서 추후 경기하강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성숙한 위험관리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국내은행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행태에서 탈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은행과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적어도 금융감독제도에 내재해 있는 경기순응성 문제에 은행이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의 개입 없이도 대출의 경기변동성을 이미 완화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4. 잠재적 위험

<표 3>의 결과만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선진적으로 변모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도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행태가 포함된 자료로 거시금융감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은 경기순환의 하강주기라는 일면만을 보이고 있어서 경기변동과 대손충당금 적립행태의 연관성을 논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개별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중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과 투입된 은행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의 행태를 정리하고 있다. [그림 4]의 국민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대손충당금 전입액 및 적립액 비율이 GDP 증가율 및 수익성과 동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3년과 2004년에는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움직임이 GDP 증가율 및 수익성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그림 5]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던 대구은행도 국민은행과 유사한 대손충당금

[그림 4] 시중은행의 대손충당금 추이

가. 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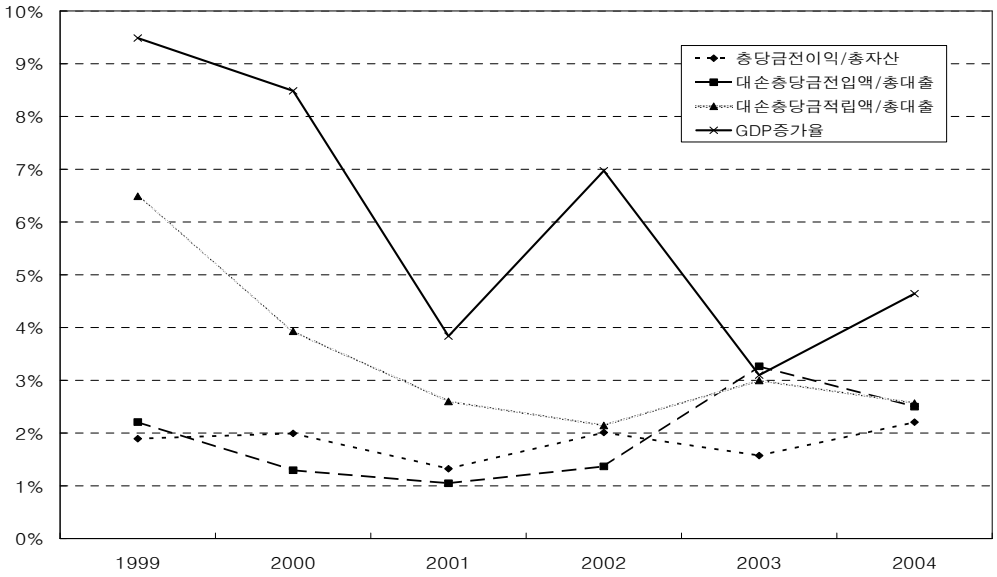

나. 외환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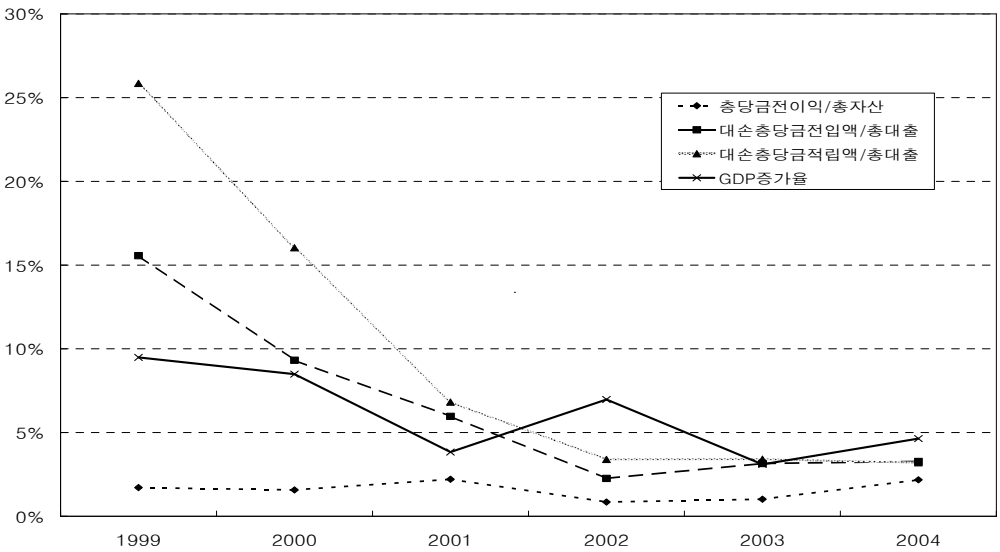

[그림 5] 지방은행의 대손충당금 추이

가. 대구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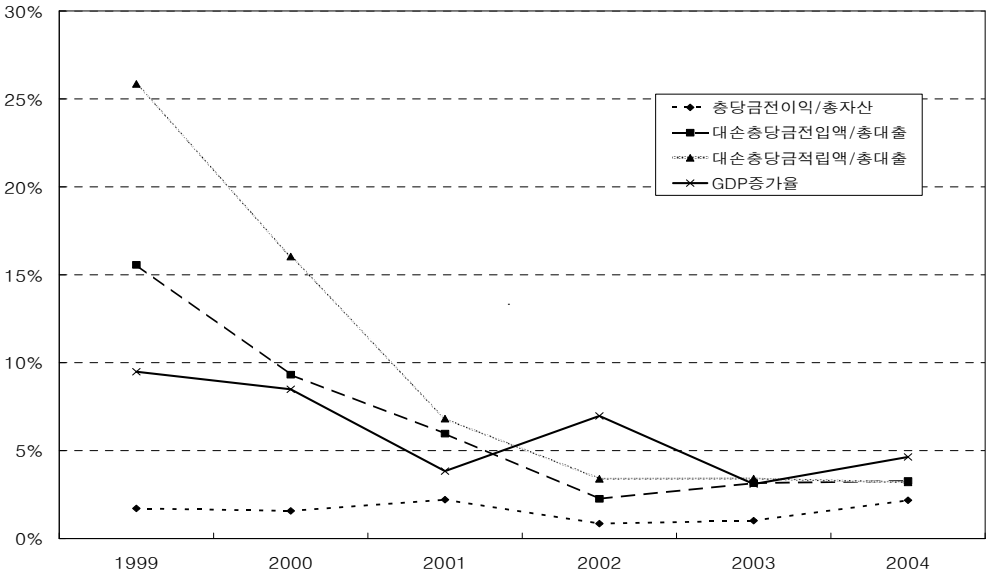

나. 광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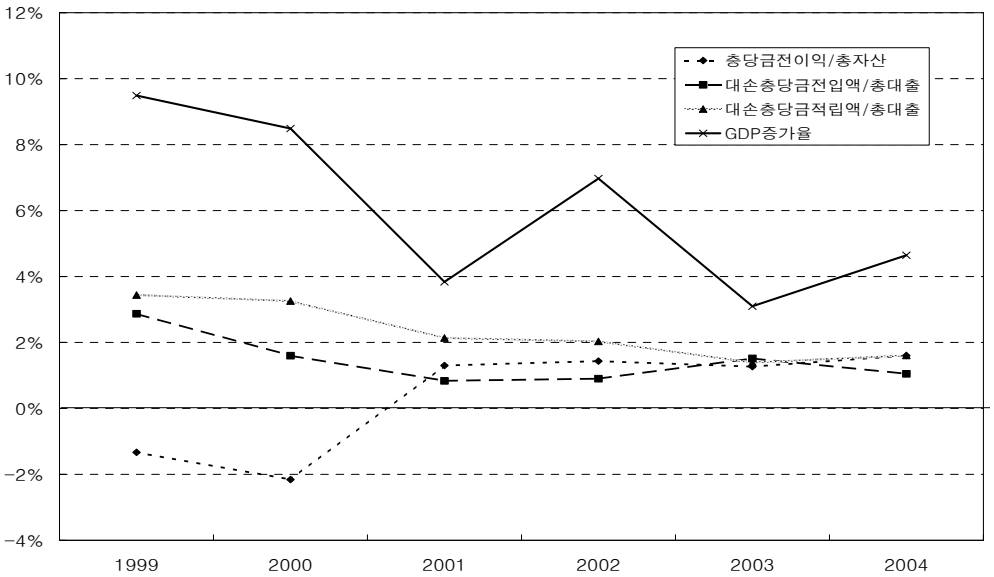

적립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외환은행 및 광주은행의 경우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국민은행 및 대구은행과 유사하게 대손충당금이 GDP 증가율 및 수익성과 동행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그 관계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금융구조조정기와 금융구조조정 완료 이후의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 행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에서는 분석기간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와 2003년부터 2004년까지로 나누어서 경기역행성가설 및 수익평준화가설을 살펴보았다. <표 4>에는 2002년 이전의 대손충당금 적립 행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였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결과는 <표 3>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결과와 유사하다.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동행성이 유의적으로 기각되는 가운데 수익평준화가설은 비교적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은행의 수익성과 대손충당금이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변모하였다. <표 5>에 의하면 개별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GDP 증가율과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전과 달리 거시적 위험 증가에 둔감한 모습을 띠는 것으로 해석된다.[38] 즉, GDP 증가율이 낮았던 2003년에는 총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전입액비율이 상승하였던 반면 GDP 증가율이 반등하였던 2004년에는 대손충당금 전입액비율이 하락하였다. 대출증가율이 증가할수록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하락하는 양상이 유의적으로 변화한 것 또한 2003년 이후의 변화된 모습이다. 한편 2003년 이후에는 수익평준화가설이 이전보다 유의적으로 지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금융구조조정을 거친 이후 최근 우리나라의 은행은 이윤을 동태적으로 평준화하려는 경향과 함께 자금공급의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행태가 변모할 개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관심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38) 2003년과 2004년 두 해만을 가지고 경기역행성가설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표 5>에서 회귀분석의 설명변수 중 GDP 증가율은 두 해의 수치만이 사용되었는데, GDP 증가율이 연도별 더미와 방법론상 유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는 2003년과 2004년에 GDP 증가율과 유사하게 움직였지만 실제로 경기와 상관관계가 없는 다른 변수를 사용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과 해당 변수와의 연관성을 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표 5>의 경기역행성가설에 대한 본문의 해석은 정립된 사실보다는 가능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2003년 이후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행태에 대한 변화 여부는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2000~2004년, 2001~2004년, 2002~2005년 중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식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GDP 증가율과 대손충당금 적립의 관계가 양(+)의 관계에서 부(-)의 관계로 점차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대손충당금 전입액에 대한 실증분석(2000~2002년)

	(1)	(2)	(3)	(4)	(5)	(6)
△*GDP*	0.492** (0.022)		0.530*** (0.194)	0.532*** (0.146)	0.534*** (0.141)	0.533*** (0.148)
EBTP/A		0.497 (0.411)	0.518 (0.421)	0.724 (0.467)	0.747 (0.472)	0.720 (0.482)
L/A				-0.136*** (0.030)	-0.131*** (0.040)	-0.136*** (0.037)
△*L*				-0.050 (0.033)	-0.051 (0.040)	-0.051 (0.037)
CAP/A				-0.006 (0.493)	-0.239 (0.588)	-0.000 (0.602)
*Dpf*2				0.014** (0.007)		0.014* (0.007)
Dlocal					-0.003 (0.010)	-0.000 (0.010)
Adj-R^2	0.099	0.000	0.124	0.359	0.303	0.339
Akaike info criterion	-4.413	-4.247	-4.356	-4.564	-4.480	-4.513
Schwarz criterion	-4.331	-4.163	-4.229	-4.266	-4.181	-4.172
F-statistic	5.730	0.984	3.750	4.550	3.749	3.780

주: ( ) 안은 표준오차이고, *, **, ***는 각각 10%, 5%, 1%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5〉 대손충당금 전입액에 대한 실증분석(2003~2004년)

	(1)	(2)	(3)	(4)	(5)	(6)
△*GDP*	-0.502** (0.221)		-0.693** (0.282)	-0.944*** (0.325)	-0.938*** (0.317)	-0.933** (0.324)
EBTP/A		1.029* (0.531)	1.284** (0.500)	0.843* (0.456)	0.831* (0.424)	0.875* (0.492)
L/A				-0.032** (0.012)	-0.029** (0.013)	-0.030** (0.013)
△*L*				-0.068** (0.028)	-0.070** (0.027)	-0.068** (0.029)
CAP/A				-0.179 (0.293)	-0.184 (0.302)	-0.174 (0.304)
*Dpf*2				0.001 (0.003)		0.001 (0.003)
Dlocal					-0.002 (0.004)	-0.002 (0.004)
Adj-R^2	0.066	0.058	0.199	0.388	0.389	0.357
Akaike info criterion	-5.922	-5.818	-5.945	-6.094	-6.096	-6.022
Schwarz criterion	-5.828	-5.721	-5.799	-5.753	-5.755	-5.632
F-statistic	2.970	2.487	3.987	3.532	3.548	2.901

주: ( ) 안은 표준오차이고, *, **, ***는 각각 10%, 5%, 1%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Ⅳ. 정책제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경기역행적이어서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이윤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출 관련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공격적인 경영이 시행된다면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기상승국면의 대출 증가에 대하여 은행에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이라는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대출공급량을 제한할 수 있다면 실물경제의 버블화를 방지하고 경기하강국면에서 발생하는 대손의 증가를 적립된 충당금으로 상쇄할 수 있어서 경기의 진폭을 축소하는 동시에 금융경제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은행의 행태를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전제조건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동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제Ⅲ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행태는 경기순응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에 따른 경기 진폭의 확장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대출이 경기순응성을 띠고 대출증가율이 높을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신용공급의 패턴이 경기순응적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기 자체가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2003년 이후에는 대손충당금의 경기역행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지나치게 낮아서 경기와의 상관성을 논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었고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대손충당금 적립행태는 공적자금의 투입과 대손충당금제도 변경 등 정책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2년까지의 결과에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2003년과 2004년 2개년간의 자료만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역행성을 주장하는 것이 한계는 있다. 그러나 최근의 행태에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시의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되면서 은행의 소유 및 경영지배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을 고려하면 대손충당금 적립행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공적자금 투입 후 민영화가 실시되지 않은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매우 높다.[39] 이에 따라 주주이익을 극대화하

는 방향으로 은행의 경영이 정착되고 있다.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도 정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위험관리시스템 등이 현저히 개선되어서 정부의 정책개입 등 외적 요인에 의한 경영악화의 개연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금융구조조정 이후 소유 및 경영지배구조가 현격히 개선된 것은 개별 은행의 건전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경제 전체의 시스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과거와 같이 관치금융이 성행할 경우 일종의 규제적 도박행위(regulatory gambling)에 따른 폐해도 크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이익추구가 경제 내 마찰적 요인의 존재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라는 구성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주가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단기업적에 지나치게 연동할 경우 은행 경영진은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40] 물론 이러한 우려만으로 정부의 광범위한 은행 간섭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금융감독의 제도적 요인에 의한 거시경제적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대손충당금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은 결국 대손충당금의 적립을 강화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현재 일반대손충당금은 대출의 만기까지의 예상손실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의 실제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표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행은 정상여신의 경우 기업여신은 0.5%, 가계여신은 0.75%, 그리고 신용카드여신은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41] 정상여신에 대한 일반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단기 예상손실률을 근거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만기까지의 해당여신의 예상손실률은 단기 예상손실률을 상회하기 때문에 일반대손충당금으로는 은행의 신용위험 손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42]

그렇다면 신용위험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 예상손실률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것이 바람

39) 2005년 10월 말 현재 몇몇 정부소유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85.8%), 하나은행(76.8%), 외환은행(74.3%), 신한지주회사(63.2%) 등 주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11.7%와 18.0%로 비교적 낮다.

40) 최근 시중은행의 부행장급 임원의 경우 연간 실적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는 관행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이 단기실적주의에 치중할 개연성을 반증한다.

41) 정상여신에 대해서는 특별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비율을 일반대손충당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한가?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과 회계감독당국이 상반된 대답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가치를 반영한 회계(fair value accounting)로 투자자, 예금자, 대출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회계감독당국은 현재화되지 않은 위험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은행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Jackson and Lodge[2000], Matherat[2003]).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은 부실채권의 객관적인 발생이 부실의 개연성이 아니라 실제 관찰에 기초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43] 한편 부실 인식은 개별 채권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유사한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하여 위험을 측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둠으로써 예상손실률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기장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 놓고 있다. 단, 재무제표는 건전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함으로써 조작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회계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는 명시적으로 추가의 충당금계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의 강화를 의미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또한 세무당국이 동태적 대손충당금을 법인세 산출 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립의 유인도 약할 것이다.[44]

대손충당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근거가 경기중화적인(acyclical) 금융감독제도로의 개편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면 신바젤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실질적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신바젤협약에 따라 내부등급모형(Internal Ratings-based Model)에

42) 반면 특별대손충당금은 신용위험이 현재화된 이후 위험에 상응하는 만큼 충당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과소적립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43)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IAS) 39 on Financial Statements(*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를 참고하라.

44) 현재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① 채권잔액 × 2%, ②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③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만약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신설되면 손금인정의 규모도 커질 것인데, 이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세무당국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의한 자본규제가 도입될 경우 은행은 동 모형의 실행을 위해 차주, 자산, 위험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산포트폴리오별로 부도확률(probability of default), 부도 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부도 시 위험노출 정도(exposure at default) 등의 모수값을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해야 한다. 소액여신 등 위험특성이 동질적인 자산군에 대해서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을 적용하여 손실률을 산출할 수 있고 위험특성이 개별적이거나 편중도가 높은 여신은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여신 증감 추이, 여신정책의 변화, 거시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바젤협약의 두 번째 원칙(pillar)인 감독적 심사(supervisory review)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신바젤협약체제에서 금융감독당국은 동태적 대손충당금이라는 별도의 제도 도입 없이도 동 제도를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제도의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여신별 예상손실률의 산출과 동 비율의 안정성 검증 및 신뢰성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참여자가 납득할 만한 예상손실률이 산출된다면 금융감독당국과 회계감독당국 간의 상충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며, 아울러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대한 세무당국의 이견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 대손충당금제도에 내재한 금융감독의 경기순응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은 미시적 성격이 강조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거시경제적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금융의 불안정성과 이를 제어하려는 건전성 감독은 실물경제에서 발생한 외생충격을 증폭시켜서 경기순환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신바젤협약의 도입과 같은 최근의 금융감독 강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순환의 관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주목해야 할 점은 감독제도 자체에 배태되어 있는 경기순응성을 얼마나 축소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금융감독정책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면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의 참여

자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금융시스템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하여 실물경기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정책은 최대한 경제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경기중화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경기중화적인 성격을 지닌 금융감독 중 대표적인 사례가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이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는 대출 및 금융감독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출과 동시에 만기까지 예상되는 대손손실에 대비하여 미리 적립하는 제도이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요청되는 경우는 은행이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거나 단기적인 업적에 집착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점에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기중화적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대손충당금의 경기역행성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단기업적주의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탄력적 적립을 통한 수익평준화 성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할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정책의 성공은 감독당국과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참여자 간 신뢰유지 및 충분한 의사소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화정책과 달리 금융감독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정책은 가급적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제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변화의 방식을 사전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감독제도에 내재한 거시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금융안전망의 운영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대식, “은행의 적정대손충당금 산정,” 「재무연구」, 제7호, 1994.

김현욱 · 이항용, 「금융산업의 자본규제와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에 관한 연구: 신바젤협약(Basel II) 도입의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05-16, 한국개발연구원, 2005.

금융감독원,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선방안,” 내부자료, 200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제6호, 2005.

함준호 · 홍승제, “금융그룹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글로벌 시대의 한국금융: 금융그룹화의 영향과 과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

Alchian, Armen and Benjamin Klein, “On a Correct Measure of Inflation,”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15, 1973.

Allen, Linda and Anthony Saunders, “A Survey of Cyclical Effects in Credit Risk Measurement Models,” BIS Working Papers No. 126,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January 2003.

Altman, Edward I., Andrea Resti, and Andrea Sironi, “The Link between Default and Rocovery Rates: Effects on the Procyclicality of Regulatory Capital Ratios,” BIS Working Papers No.113, July 2002.

Ammato, Jeffery D. and Craig H. Furfine, “Are Credit Ratings Procyclical?” BIS Working Papers No.129,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February 2003.

Asea, Patrick and Brock Blomberg, “Lending Cycles,” *Journal of Econometrics*, Vol.83, No.1-2, 1998.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Sound Practices for Loan Accounting and Disclosure*, 1999.

Berger, Allen and Gregory Udell, “Did Risk-based Capital Allocate Bank Credit and Cause a “Credit Crunch”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26, 1994.

Berger, Allen N. and Gregory F. Udell, “The Institutional Memory Hypothesis and the Procyclicality of Bank Lending Behavior,” BIS Working Papers No.125,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January 2003.

Bernanke, Ben and Mark Gertler, “Agency Costs, Net Worth, and Business Fluctu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9, No.1, 1989, pp.14～31.

Bernanke, Ben, Mark Gertler, and Simon Gilchrist, “The Financial Accelerator in a Quantitative Business Cycle Framework,” in John Taylor and Michael Woodford (eds.), *Handbook of Macroeconomics*, Amsterdam, North Holland, 1999, pp.1341～1393.

Bikker, Jacob A. and Haixia Hu, "Cyclical Patterns in Profits, Provisioning and Lending of Banks and Procyclicality of the New Basel Capital Requirements," Research Series Supervision No.39, the Netherlandsche Bank, December 2001.

Bikker, Jacob A. and P. A. Metzemakers, "Bank Provisioning Behaviour and Procyclicality," Research Series Supervision No. 50, the Netherlandsche Bank, October 2002.

Blum, Jurg and Martin Hellwig, "The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for Bank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39, 1995, pp.739～749.

Borio, Claudio and Philip Lowe, "To Provision or Not to Provision," *BIS Quarterly Review*,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September 2001.

Borio, Claudio, "Towards a Macroprudential Framework for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BIS Working Papers, No.128,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February 2003.

Borio, Claudio, Furfine Craig and Philip Lowe, "Procyclicality of the Financial System and Financial Stability," Marrying the Macro- and Micro-Prudential Dimensions of Financial Stability, BIS Working Papers, No.1, March 2001.

Carpenter, Seth B., William Whitesell, and Egon Zakrajsek, "Capital Requirements, Busisness Loans, and Business Cycl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tandardized Approach in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mimeo, November 2001.

Cavallo, Michele and Giovanni Majnoni, "Do Banks Provision for Bad Loan in Good Times?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Worldbank Working Papers No.2619, 2001.

Chiuri, Maria Concetta, Giovanni Ferri, and Giovanni Majnoni, "The Macroeconomic Impact of Bank Capital Requirements in Emerging Economies: Past Evidence to Assess the Futur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26, 2002.

Cochrane, John, "Shocks,"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4698, NBER, 1995.

Cortavarria, Luis, Claudia Dziobek, Akihiro Kanaya, and Inwon Song, "Loan Review, Provisioning, and Macroeconomic Linkages," IMF Working Paper WP/00/195, December 2000.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Recent Trends in Commercial Bank Profitability: A Staff Study," 1986.

Fisher, Stanley and Robert Merton, "Macroeconomics and Finance: The Role of the Stock Market,"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Vol.21, 1984, pp.57～108.

Greenwalt, Mary Brady and Josephe Sinkey, Jr., "Bank Loan-Loss Provisions and the Income-Smoothing Hypothesis: An Empirical Analysis, 1976-1984,"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Vol.1, 1988, pp.301～318.

Grossl-Geschwendtner, Ingrid, "Regul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Stability of the Banking Sector: A Comparis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Konjunkturpolitik*, Vol.39, No.5, 1993.

Hall, Simon and Anne Vila Wetherilt, "The Role of Corporate Balance Sheets and Bank Lending

Policies in a Financial Accelerator Framework," Working Paper Series No.166, Bank of England, 2002.

Jackson, Patricia and David Lodge, "Fair Value Accounting, Capital Standards, Expected Loss Provisioning, and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tability Review*, Bank of England, June 2000.

Keeton, William R., "Does Faster Loan Growth Lead to Higher Loan Losses?" *Economic Review*, FRB of Kansas City, 1999.

Kiyotaki, Nobuhiro and John Moore, "Credit Cycl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05, No.2, 1997, pp.211～248.

Kocherlakota, Narayana, "Creating Business Cycles through Credit Constraints,"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Vol.24, No.3, 2000, pp.2～10.

Laeven, Luc and Giovanni Majnoni, "Loan Loss Provisioning and Economic Slowdowns," Policy Research Paper Working Paper No.2749, Worldbank, December 2001.

Lis, Santiago Fernandez de, Jorge Martinez Pages, and Jesus Saurina, "Credit Growth, Problem Loans and Credit Risk Provisioning in Spain," Banco de Espana, 2000.

Lowe, Philip, "Credit Risk Measurement and Procyclicality," BIS Working Papers No.116,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September 2002.

Mann, Flona and Ian Michael, "Dynamic Provisioning: Issues and Application," *Financial Stability Review*, Bank of England, December 2002.

Matherat, Sylvi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isation and Financial Stability," *FSR*, Banque de France, June 2003.

Modigliani, Franco and Merton Miller,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48, 1958, pp.261～297.

Peek, Joe and Eric Rosengren, "Do Monetary Policy and Regulatory Policy Affect Bank Loans? Bank Lending and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Conference Series,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1995.

Rajan, Raghuram G., "Why Bank Credit Policies Fluctuate: A Theory and Some Evid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9, No.2, May 1994, pp.399～441.

Scheinkman, Jose and Laurence Weiss, "Borrwoing Constraints and Aggregate Economic Activity," *Econometrica*, Vol.54, 1986, pp.23～45.

Segoviano, Miguel A. and Philip Lowe, "Internal Ratings, the Business Cycle and Capital Requirements: Some Evidence from an Emerging Market Economy," BIS Working Papers No.128,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September 2002.

Sinkey, Josephe Jr. and Mary Brady Greenwalt, "Loan-Loss Experience and Risk-Taking Behavior at Large Commercial Banks,"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Vol.5, 1991, pp.43～59.

Westpac Bank, *Annual Financial Review*, 1999.